

# 서울남부지방법원

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1021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1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황승환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06.14. 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3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정영민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0.12.18.~	385,000,000		2020.12.21.	2020.10.27.		
주택도 시보증 공사	전부	권리신고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0.12.18.~ 2022.12.17.	385,000,000		2020.12.21.	2020.10.27.	2025.8.27.	
<p>&lt;비고&gt; 주택도시보증공사: 경매신청채권자이고, 주택임차권자 정영민의 임차보증금을 승계함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,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10212

### [물건 1]

#### 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0-22, 1000-23  
유니크1차  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7길 26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
6층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-단지형다세대)  
1층 17.72㎡  
2층 106.75㎡  
3층 106.75㎡  
4층 106.75㎡  
5층 99.29㎡  
6층 99.29㎡  
옥탑1층 13.16㎡(연면적제외)

####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6층 제603호  
철근콘크리트구조 29.94㎡

####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0-22  
대 140.8㎡  
2. 동 소 1000-23  
대 129.8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. 소유권  
대지권의비율 : 1, 2. 270.6분의 18.8312

감정평가액		370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1.29	370,000,000	37,000,000
2회	2026.03.19	296,000,000	29,600,000
3회	2026.04.28	236,800,000	23,680,000
4회	2026.06.10	189,440,000	18,944,000

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,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